

#### [서식 예]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(당사자 간 직계인척)

# 소 장

원 고 ○ ○ ○ 1900년 ○월 ○일생 등록기준지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주소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) 전화 ○○○ - ○○○○

전화 000 - 0000

### 혼인무효확인청구의 소

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들 사이에 20○○. ○. ○. ○○시 ○○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

## 청 구 원 인

- 1. 피고 김△△은 원고의 차녀이며, 같은 피고 윤△△는 20○○. ○. ○. 피고 김△ △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원고에게는 둘째 사위입니다.
- 2. 피고 김△△은 ○○제과 ○○대리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대리점 주인이었던 소외 망 윤▲▲와 혼인을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. 그러나 원고는 장성한 자식들이 있는 위 망 윤▲▲와 피고 김△△의 혼인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연락을 두절하고 살았는데, 그 후 몇 년 만에 위 망 윤▲▲가 사망하자 얼마 되지 않아 피고 김△△와 같은 피고 윤△△가 재혼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.
- 3. 피고들은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고 동거에 들어가면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, 법률상 부부로서 살고 있었는데 이후 집안간 왕래하는 과정에서 피고 윤△△가 위 망 윤▲▲의 자로서 피고들 간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
- 4. 원고와 가족들은 위와 같은 청천 벽력같은 소식에 우선 당사자들에게 관계를 정리하고 모든 것을 없었던 상태로 되돌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사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법률상 부부이므로 헤어질 수 없다며 가족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.
- 5. 원고와 가족들은 피고들이 원만히 이번 일을 해결하기를 바랐으나, 피고들은 가족들의 거듭된 요구를 거절하고 있고, 당사자들의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3호에 해당되어 무효인 혼인에 해당되므로 원고가 스스로 피고들의 패륜적인 관계를 종결시키고자 본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.

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(김△△)

1.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(윤△△)

1. 갑 제3호증 혼인관계증명서

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2통

1. 납부서 1통



20ㅇㅇ년 ㅇ월 ㅇ일

원 고 ㅇ ㅇ ㅇ (인)

○ ○ 가 정 법 원 귀 중



제출법원	※ 아래참조	관련법규	가사소송법 제22, 23, 24조
제기권자	(가사소송법 제23조) ·당사자 ·법정대리인 ·4촌 이내의 친족		
상 대 방	<ul> <li>(가사소송법 제24조)</li> <li>·부부의 일방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함</li> <li>·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, 부부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함</li> <li>·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함</li> </ul>		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불복절차 및 기간	· 항소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 ·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		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혼인무효 사 유	(민법 제815조) 1.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. 당사자간에 8촌 이내의 혈족(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) 3.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.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		

#### ※ 제 출 법 원(가사소송법 제22조)

- 1.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
- 2.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
-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,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
- 4.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
- 5.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